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하수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 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샘물등의 취수량·수입량 신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징수유예·분할납부 등에 대한 세부적 절차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 절차 마련(안 제49조의2, 별지 제56호의2서식)

- 1)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신청시 부과 제외 신청서 서식과 부과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제출시기를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로 정함

나. 부담금 부과를 위한 샘물등의 취수량 제출 등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안 제49조의3, 별지 제56호의3서식 및 제56호의4서식)

- 1)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 등의 취수량 측정결과 제출, 수입업자의

- 수입실적 보고서 보고 서식 등을 마련하고, 제출시기를 규정
- 다. 시·도지사의 샘플 취수량, 수입실적 조사절차 마련(안 제49조의4)
- 1) 샘플등의 취수량, 수입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의 차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라. 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고지 방법 규정(안 제49조의5, 별지 제56호의5서식)
- 1) 부담금 징수절차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 마.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마련(안 제49조의6, 별지 제56호의6서식, 제56호의7서식)
- 1)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는 이의신청 절차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부담금의 이의신청 및 심의결과 통지와 관련된 서류 서식을 규정
- 바. 부담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신청 및 승인 절차 규정(안 제49조의7, 별지 제56호의8서식~제56호의10서식)
- 1)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는 부담금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및 승인, 취소와 관련된 서류 서식을 규정
- 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법정민원 제출서류 경감(별지 제17호의2 서식)
- 1) 유출지하수 이용 계획변경 및 종료 신고시 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인 부담 경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5년 예산에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기 반영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40조의3제6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 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
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제49조의3(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56호의 3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계 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4(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5(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①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의6(이의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제49조의7(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영 제40조의6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56호의8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9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56호의10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6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출지하수 이용 [] 계획 변경 신고서
[] 종료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유출지하수 발생량	m ³ /일	
이용계획 변경 내용					
이용 종료 내용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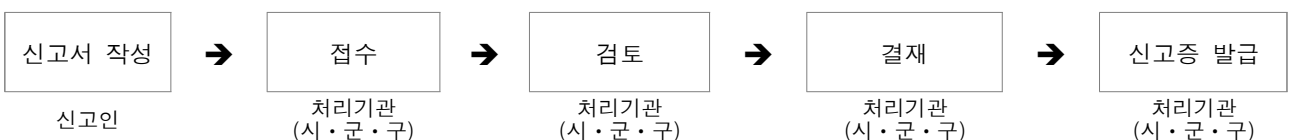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성명(법인명) 또는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2.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수출 (납품제공) 실적	용량규격	수량	수출(납품)량(m³)	수출국 (납품·제공처)	수출일 (납품·제공일)
수출 세관명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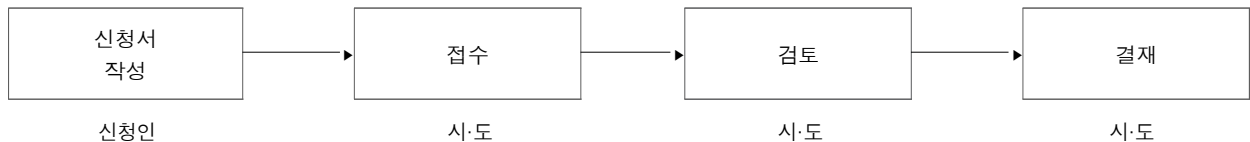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 1부 2. 우리나라에서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납품계약서 사본 1부 3.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제공하는 경우: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 1부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소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소량 증빙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업 체 명

수신자 시·도지사

(경유)

제 목 샘물(염지하수) 개발자의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보고서(년 분기)

「지하수법」 제3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수량을 보고합니다.

상 호		허가(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생산구분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기타
원수구분		총 취수량(㎥)	샘물: 염지하수: 기타샘물:
구분 취수량	①전 분기말 계측기 지침(㎥)	②당해 분기말 계측기 지침(㎥)	②-①(㎥)
	계		
1호정			
2호정			
3호정			
·			
·			

붙임 : 1. 취수량·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 취수량

2. 사업자 등록증명(「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업 체 명

수신자 시 · 도지사

(경유)

제 목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입실적 보고(년 분기)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상 호		허가(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원수구분	
구 분	수량(개)	총수입량(㎥)	
계			
먹는샘물 용량규 격별(L)			
먹는염지하수 용량 규격별(L)			

붙임 : 1. 수입신고서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명(「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 신 명 의 직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사업자등록증명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고인

(서명 또는 인)

부 담 금 부 과 대 장

① 발행 번호	② 납 부 고 지 연월일	③ 상 호 (업소명)	④ 대표자 성 명	⑤ 주 소	⑥ 기간	⑦ 취수량 (m ³)	⑧ 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	⑨ 부과 금액	⑩ 납부 기간	⑪ 납부일	⑫ 비고

364mm×257mm [인쇄용지(2급) 60g/m²]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5일
납부 의무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납부고지서 발부번호				
고지서 발부일자				
부과금액				
이의신청 사유				

「지하수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통지서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도,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 결정서

납부 의무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심의결정 사항	구분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당초			
	변경			
심의결정 사유				

「지하수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처리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납부고지서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납부 의무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징수유예 신청사항	신청사유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징수유예 신청기간	징수유예 신청금액			
분할납부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1차			4차				
	2차			5차				
	3차			6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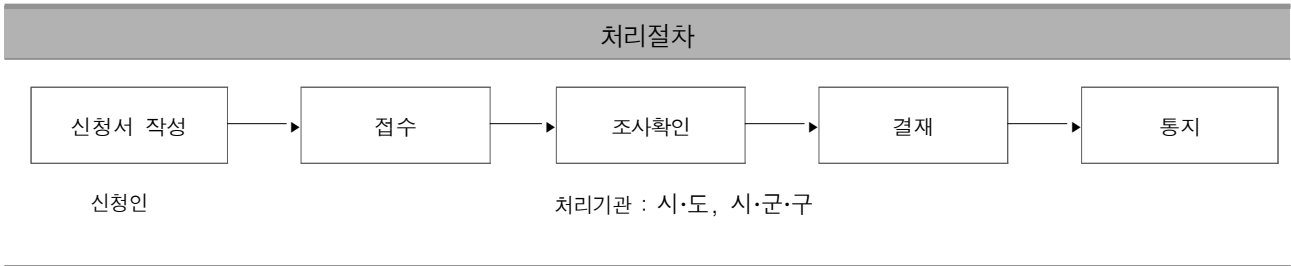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납부통지서 2. 징수유예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	--	------------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 분할납부
[]승인 []불승인 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부과일자		부과기간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차감부과금액
분할납부 허가 및 불허가사항	분할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불허가사유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5차	. . .			
	6차	.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처리기관의 장 직인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그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변경 등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 좋아지거나 다른 사정의 변화로 그 유예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 80g/㎡]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부 의무자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징수유예 허가사항	세목	연도·기분	납부기한	금액	징수유예기간

분납 허가사항	횟수	납부기한	분납금액	세목	연도·기분	금액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취소일자	
취소사유	

년 월 일자로 귀하에게 승인한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9조의7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리기관의 장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9조의2(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40조의3제6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2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제외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제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1부씩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u>1. 수출하는 경우 : 수출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수출실적확인서</u> <u>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 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경우 : 납품계약서 사본</u> <u>3.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u> <u>· 제공하는 경우 : 재난구호기관·단체장이 발급한 제공확인서</u>		

<신 설>

4. 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영향심사 중에 취수하는 경우 : 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서 사본 및 취수량 증빙자료

제49조의3(샘물등의 취수량 등 제출) ①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샘물등의 개발자”라 한다)는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라 취수량 측정결과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샘물등의 취수량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취수정·계측기별 일일 취수량과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말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40조의4제3항에 따라 분기별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먹는샘물등의 수입실적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수입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의4(샘물등의 취수량 등의 조사) ① 시·도지사는 제4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의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확인 결과 샘물등의 취수량이나 먹는샘물등의 수입량이 적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샘물등의 개발자나 먹는샘물등의 수

<신 설>

입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내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5(부담금의 부과·고지 등) ① 영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6호의5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갖추어 두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49조의6(이의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56호의6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지는 별지 제56호의7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이의신청 심의결정서로 한다.

<신 설>

제49조의7(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및 영 제40조의6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56호의 8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56호의9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분할납부 승인(불승인)통지서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부담금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56호의10서식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연 락 처	(044) 201 - 7183